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부천시 창의도시
City of Literature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7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2021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목차

CONTENTS

제1장 옴부즈만 구성·운영 _ 4

1. 도입배경 …… 6
2. 운영근거 …… 7
3. 운영형태 …… 7
4. 구성·운영 …… 8
5. 시민옴부즈만 소개 …… 9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_ 10

1. 설치근거 …… 12
2. 구성 및 운영 …… 12
3. 기능 …… 13
4. 활동현황 …… 13

제3장 옴부즈만 활동현황 _ 14

1.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 16
2. 시민옴부즈만 자문(소)위원회 회의개최 …… 16
3.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 17
4. 2021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 18
5. 우수사례 공유 …… 19

제4장
옴부즈만 운영계획 _ 21

1.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 22
2.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상담실 운영 22
3.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관련 ‘옴부즈만 상담방’ 운영 23
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3

제5장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_ 24

1. 신청대상 26
2. 제외대상 26
3. 처리절차 27
4. 접수·처리 현황 29
5. 분야별 접수현황 30
6. 고충민원 처리결과(상세) 31
7. 2021년 민원처리 현황 32

제6장
고충민원 주요 처리 사례 _ 34

1. 접수 처리 사례 36
2. 기타 상담 및 처리 사례 118

부록 _ 124

1. 연혁 126
2. 역대 시민옴부즈만 현황 129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130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6

01

옴부즈만 구성·운영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도입배경 6
2. 운영근거 7
3. 운영형태 7
4. 구성·운영 8
5. 시민옴부즈만 소개 9

제1장
옴부즈만 구성·운영

1. 도입배경

옴부즈만(Ombudsman)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행정기관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 우리 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인천국제공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73년 7월 시 승격 이래 산업화·도시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동과 상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형성한 신도시를 건설하였고, 중소기업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가를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 도시기반 시설 등 편익시설이 인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 증폭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민의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민 요구에 대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1996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1997년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3. 운영형태

▶ 설치기관에 따른 분류형태로는 행정부형이고, 목적과 기능에 따른 분류 형태로는 고충처리·행정감시형이며, 의사결정방식 분류에 따른 형태로는 합의제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옴부즈만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판단하는 독임제 형태입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독임제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자문위원회(20인 이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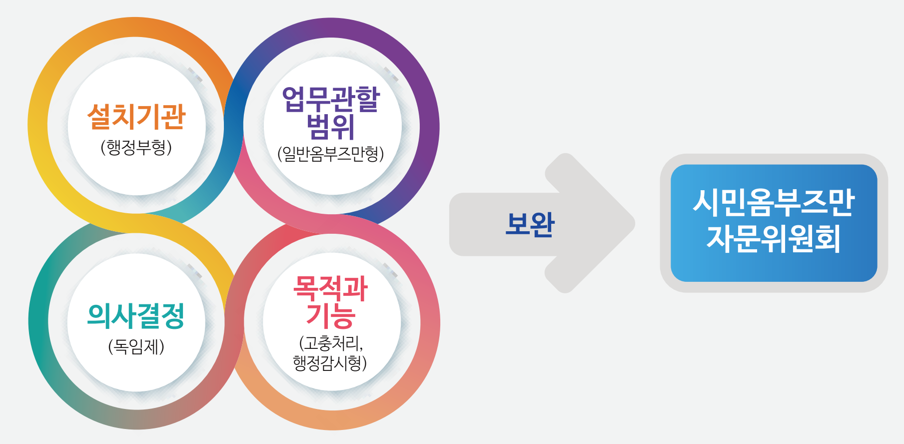

4. 구성·운영

▶ **구　　성 :** 1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상근

▶ **직무 및 권한**

-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 권고, 의견 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중재

▶ **사무기구**

소속	계	6급	7급 이하	전문조사원	비고
감사담당관	4	2	2	-	

※ 6급 팀장은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업무 병행 수행

5. 시민옴부즈만 소개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주요경력	임 기
	김 영 협	• 부천시민옴부즈만(제10대) • 경기도의회 9대의원 •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감사)	2021. 10. 1.~ 2023. 9. 30.

옴부즈만의 자격 및 위촉(조례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

0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설치근거 12
2. 구성 및 운영 12
3. 기능 13
4. 활동현황 13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

1. 설치근거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2.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9명

▶ **위 원 장 :** 시민옴부즈만(1명)

▶ **위촉위원 :** 18명(당연직 시민옴부즈만 제외)

계	분야별 구성 현황								
	법률	의료	노무	건축	세무	회계	복지	환경	행정
18	3	2	2	5	1	1	2	1	1

※ 건축분야 고충민원 증가에 따른 건축 전문가 3명 신규 추가 위촉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방법 :**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옴부즈만이 위촉

▶ **운영방법**

- 연2회 회의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위원장 포함 9인 이내)

3. 기능

▶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

▶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심의

▶ 기타 시민옴부즈만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활동현황

구 분	개최일자	내 용	비 고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2021. 2. 17.	•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심의	서면 심의
옴부즈만 자문소위원회	2021. 11. 19.	• 고충민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적법여부) 관련 심의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2021. 12. 3.	•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운영계획 설명	

03

옴부즈만 활동현황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16

2. 시민옴부즈만 자문(소)위원회 회의개최 16

3.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17

4. 2021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18

5. 우수사례 공유 19

제3장
옴부즈만 활동현황

1.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서면심의

▶ **일　　시 :** 2021. 2. 17.(수)

▶ **심의위원 :** 16명(위원장, 자문위원 15)

계	분야별 구성현황(옴부즈만 제외)								
	법률	의료	노무	건축	세무	회계	복지	환경	행정
15	3	2	2	2	1	1	2	1	1

▶ **근　　거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심의내용 :** 202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심의 등

▶ **심의결과**

- 결　정 : 원안 가결
- 사　유 : 심의위원 전원 동의

2. 시민옴부즈만 자문(소)위원회 회의개최

2021년 제1차 자문(소)위원회 회의

▶ **일　　시 :** 2021. 11. 19.(금) 11:00~12:00

▶ **장　　소 :** 시청 사랑방1

▶ **참석인원 :** 9명(위원장, 자문위원 6, 관계 공무원 2 포함)

계	분야별 구성현황(옴부즈만 제외)		
	법률	건축	행정
6	1	2	3

▶ **근　　거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회의 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적법 여부 심의

▶ **심의 결과**

- 자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적법 여부): 의견표명

▶ **회의 사진**

3.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위촉개요

▶ **일　　시 :** 2021. 12. 3.(금) 11:00 ~ 12:00

▶ **장　　소 :** 창의실(5층)

▶ **위촉인원 :** 18명 (신규 5, 연임 13)

계	분야별 구성현황(옴부즈만 제외)								
	법률	의료	노무	건축	세무	회계	복지	환경	행정
18	3	2	2	5	1	1	2	1	1

▶ **위촉기간 :** 2021. 12. 4. ~ 2023. 12. 3.(2년)

▶ **근　　거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운영계획 설명

▶ **행사사진**

4. 2021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

평가개요

- ▶ **평가대상 :**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고충민원만족도
- ▶ **대상기간 :** '20. 9. 1. ~ '21. 8. 31.
- ▶ **대상기관 :** 총 304개 기관
  - ☞ 중앙 44,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
- ▶ **평가내용 :** 3개 분야 10개 지표 평가

평가결과

- ▶ 국민권익위 주관(한국능률협회 평가위탁)으로 실시한 2021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 기관 선정**
  - ☞ 평가결과 : **75개 기관 중 1위**

※ 평가결과 종합

구분	평가결과	타시 평균	평균과의 차
100점 환산점수	**94.12**	65.29	+28.83

5.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 시흥시 벤치마킹

▶ **일 시 :** 2021. 9. 14.(화) 14:00

▶ **방 문 자 :** 민원조사팀장 외 1명

▶ **내 용 :** 시민호민관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방문사진**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우수사례 공유 회의

▶ **일 시 :** 2021. 10. 25.(월) 14:00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ZOOM)

▶ **대 상 :** 6명

- 부천시(2) : 시민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담당
- 서울시(2)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담당
- 경찰청(2) : 시민청문관, 반부패추진계장

▶ **내 용 :**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사례 공유

6.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의장 선출

2021년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및 공동의장 선출

▶ **일 시 :** 2021. 12. 1.(수) 14:00~16:3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

▶ **참 석 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7명 등

▶ **내 용**

- 전국협의회 공동의장 선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성과 및 업무방향 소개
- 전국협의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행사사진**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04

옴부즈만 운영계획

1. 시민옴부즈만 제도 22
2.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상담실 운영 22
3.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관련 '옴부즈만 상담방' 운영 23
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3

제4장
옴부즈만 운영계획

1. 시민옴부즈만 제도 홍보

▶ **운영시기 :** 2022. 3. ~

▶ **방 법**

- 안내문 및 물품 등 홍보물 제작 배부

※ 시 홈페이지 등 SNS 홍보,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배부

▶ **내 용 :** 옴부즈만 역할, 처리대상 민원, 이용절차, 문의처 등

▶ **방 법 :** 기 제작 물품 등 활용

2.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상담실 운영

▶ **대 상 :** 지하철역, 아파트형공장, 전통시장, 행정복지센터 등

▶ **내 용 :** 고충민원 맞춤형 현장 방문 상담

- 납세자보호관[1] 병행 실시

날 짜	대 상	날 짜	대 상
3. 16. (수)	부천상동 시장	7. 20. (수)	아파트형 공장
4. 20. (수)	아파트형 공장	8. 17. (수)	원미부흥 시장
5. 18. (수)	송내역 민원센터	10. 19. (수)	부천역 민원센터
6. 15. (수)	부천역 민원센터	11. 16. (수)	역곡상상시장
7. 20. (수)	아파트형 공장		

☞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예정**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

3.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관련 '옴부즈만 상담방'운영

▶ **추진시기 :** 수시

▶ **신 청 :** 시민, 사업부서장

▶ **상담여부 및 담당자문위원 선정 :** 시민옴부즈만+민원조사팀장

▶ **소위원회 운영 :** 접수민원 관련전문가+민원인+사업부서담당

▶ **내 용**

- 내부직원 및 옴부즈만 민원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자문실시
-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전문적 지식활용 및 옴부즈만 활성화

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일 시 :** 2022. 9. 21.(수) 10:00~16:00

▶ **장 소 :** 시청 3층 소통마당(예정)

▶ **상 담 반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및 협업기관 관계자

▶ **상담분야 :**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산업, 환경, 주택,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

(협업)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地籍), 노동관계

▶ **운영방법**

-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
-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접수 후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처리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2) 달리는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

05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신청대상 26
2. 제외대상 26
3. 처리절차 27
4. 접수·처리 현황 29
5. 분야별 접수현황 30
6. 고충민원 처리결과(상세) 31
7. 2021년 민원처리 현황 32

제5장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 신청대상

-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제외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신청인이 신청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일 경우
-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처리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고충민원 접수	**사실조사**	**심의 • 의결**	**결정통지**
• 서면, 인터넷, FAX	• 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 • 관련부서(기관) 지정 • 민원내용 통지 및 의견조회 • 서면, 현장확인, 출석조사	•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고충민원 조정·합의 심의 • 자문위원회 심의(필요 시) • 옴부즈만 심의·결의	• 관련부서(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실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조사에 착수
- 시의 관련 부서에 고충민원의 조사 취지 통보
- 관련 부서의 서류열람, 담당직원의 현황 청취
-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

▶ 조사결과 처리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민원인의 편에서 판단하고 시의 해당부서에 시정, 제도 개선사항 등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계획)를 옴부즈만에 통보

▶ 처리결과 통보

- 고충민원 조사 제외대상이 되거나 고충민원 조사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과정, 관련법규 등을 명기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시에 권고·의견표명을 하였거나 조치결과(계획)를 시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도 신청인에게 통보

▶ 공표

- 시에 대한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을 공표할 수 있음.

《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이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의

-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조사제외)

- 판결 등에 의해 권리관계가 확정, 사인간의 관리관계 등 조사제외에 속하는 사항

○ 기각

- 민원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사항

4. 접수·처리 현황

계	접 수						기타상담	진행중	이송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불수용	조정중재	취하			
112	16	3	3	9	-	1	87	-	9

▶ 현재까지 접수된 112건의 민원 중 옴부즈만에서는 고충민원 15건과 상담민원 87건을 처리하였고 경미하고 단순한 민원 9건은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고충민원 15건 가운데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은 시정권고 하였고, 행정기관의 정당한 행정행위 또는 조사제외 사유(각하)에 해당하여 신청인에게 불수용 통보한 민원은 9건이었으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원 불편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 3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였음.

▶ 이송민원 및 고충민원은 부천시 민원처리시스템의 국민신문고시스템 통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향후에도 시 홈페이지, SNS 홍보 등을 통하여 옴부즈만의 역할, 처리대상 민원, 이용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는 외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한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분야별 접수 현황

계	도시 건축	도로 교통	일반 행정	보건 환경	복지	재정 경제	기타
102	12 (11.80%)	13 (12.70%)	5 (4.90%)	4 (3.90%)	7 (6.90%)	57 (55.90%)	4 (3.90%)

☞ **소관부서 이송민원 9건 및 취하민원 1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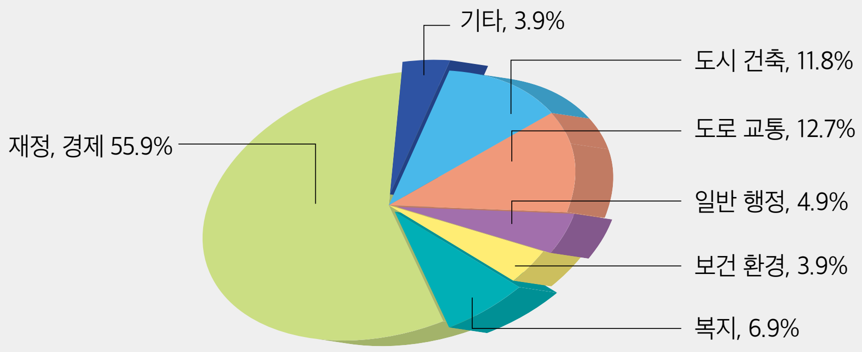

▶ 2021년 접수 민원 중 소관부서 이관 및 취하 건을 제외하고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102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경제 분야 57건(55.9%), 도로교통 분야 13건(12.7%), 도시건축 분야 12건(11.8%), 복지 분야 7건(6.9%), 일반행정 분야 5건(4.9%), 보건환경 분야 4건(3.9%) 순으로 접수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재정경제 분야 민원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늘어났으며, 그다음으로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 따른 도시건축 분야 민원과 도로교통 분야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6. 고충민원 처리결과(상세)

계	수용			불수용 (기각·각하)	취하
	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16	3	3	-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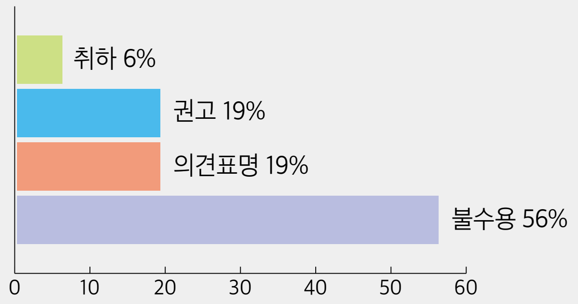

주요 수용(의견표명) 민원

- 이축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경관녹지변경 요청(4. 9.)
- 도로 물건적치 단속 소홀 및 인접 도로변 펜스철거 요청(7. 12.)
- 교회 교육관 내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 부당(10. 19.)
-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 거부 민원(12. 15.)

주요 불수용 민원

- 토지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한 이의제기(3. 16.)
- 주차단속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3. 31.)
- 무단점용료(농업기반시설) 징수 관련 개인정보 유출(6. 17.)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이의제기(11. 24.)

7. 2021년 민원처리 현황

연번	민 원 내 용	민원인	관련기관 (부서)	처리 결과
1	토지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전00	도시계획과	불수용 (기각)
2	노선버스 정류장 하차 불편 개선 요청	정00	대중교통과	수용 (의견표명)
3	주차단속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	김00	주차지도과	불수용 (기각)
4	이축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경관녹지 변경 요청	장00 외 1	도시계획과 녹 지 과	수용 (권고)
5	자동차 압류해제일자 소급 정정 요청	김00	징 수 과	불수용 (기각)
6	무단점용료(농업기반시설) 징수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이00	도시농업과 징 수 과	불수용 (기각)
7	도로 물건적치 단속 소홀 및 인접 도로변 펜스 철거 요청	김00	도로관리과 대산동 생활안전과	일부수용 (권고)
8	부천시 동물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매뉴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민00	도시농업과	불수용 (기각)
9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과태료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민00	도시농업과	불수용 (기각)
10	교회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 부당	길00	세정과 원미도서관	수용 (권고)
1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민원회신 부적절	정00	공동주택과	일부수용 (의견표명)
12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 제기	오00	재개발과	불수용 (기각)

연번	민 원 내 용	민원인	관련기관 (부서)	처리 결과
13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민원 제기	오00	재개발과	불수용 (기각)
14	상가주차장 불법 주차차량 불편신고	정00	주차지도과	불수용 (기각)
15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 거부	이00	신중동 민원위생과	일부수용 (의견표명)

06

고충민원 주요 처리 사례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접수 처리 사례 36

2. 기타 상담 및 처리 사례 118

제6장
고충민원 처리 사례

01 토지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부천시에서는 ◐◐○동 ###-##번지(자연녹지지역, 지목: 전)에 대해 평지라고 하면서도 토지의 절토, 성토 등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토지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었던 토지이므로 국토부훈령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대지이며 기 개발된 토지이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

➔ 타 민원 토지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조성이 완료된 대지가 아닌데도 절토, 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이 없으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건축관리과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인정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며 건축물대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고 월권이며 공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동 ##$-$$$번지(자연녹지지역, 지목: 전)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청원 및 탄원서에 대해 부천시는 표고75m를 초과하여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표고75m 이하의 토지부분만 주거지역(시가화용지)으로 용도변경을 탄원하였으나 폭 7~8m, 토지면적 850㎡로 건축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 옴부즈만에서 민원을 처리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도면에는 폭 16m, 표고 75m 이하의 토지면적은 1,626㎡(약 500평)이므로 표고 75m 이하의 토지만이라도 용도변경 요청

조사 및 처리결과

○ **민원인은 ◐◐○동 ###-##번지 토지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었던 토지이므로 국토부 훈령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대지이며 기 개발된 토지이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폐쇄 건축물 대장은 2001. 3. 12. ###-#번지에서 ###-@, @@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어 등재되었고, 그 이후 2001. 5. 7. ###-##번지 토지가 ###-##와 ###-@@번지로 분할되었으며, 2001. 5 .8. ###-@@번지는 ###-@번지와 합병되었으며, 과거 수차례의 소송 판결 및 2001.5.7. 토지분할 당시의 측량결과도를 참고해볼 때, 기존 건축물은 합병 후의 ###-@번지 상에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정식 쟁송절차 전에 비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귀하의 민원은 이미 3차례의 행정소송(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 패소로 종결(대법원 확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종결 및 부천시민옴부즈만에도 이미 동일한 민원사항을 제출하여 조사 미결정으로 통지된 것이 확인된 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제5호 내지 제6호,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미결정

○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불능지 제한**

▶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는 표고가 75m 초과, 경사도가 15°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불능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도 주거지역의 경우 표고 75m 이상, 경사도 15° 이상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금지 되며, 녹지지역의 경우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표고 65m 이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금지됨

○ **용도지역 및 형질 변경**

▶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주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상 시가화 예정 용지 반영 이후 동법 제29조 및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시가화예정용지 반영, 승인권자 경기도지사】

기초 조사 등	⇒	국토 계획 평가 협의	⇒	기본 계획 (안) 수립	⇒	공청회	⇒	시의회 의견 청취	⇒	市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시장)

승인 신청	⇒	관계 기관 협의	⇒	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승인	⇒	주민 열람 공고
(시장)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시장)

②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 결정권자 부천시장】

기초 조사 등	⇒	도시 관리 계획 입안 도서 작성	⇒	도시 관리 계획 입안	⇒	주민 의견 청취	⇒	관계 기관 협의	⇒	시의회 의견 청취	⇒	市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 해당 토지는 산림지역 및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녹지지역’지정 요건에 부합하며, 1998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3개동)을 개발하고 남은 잔여 토지로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9-5037호(2019.12.18.)’에 따라 부천시에서 제작한 1/1,000 수치지형도에 근거하여 표고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표고 75m 이상 및 평균 경사도 15°이상 지역으로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불능지’에 해당하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 용도의 용도지역 부여는 불가

○ 아울러 해당 토지의 토지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종결(2005. 1. 28. 대법원 확정)된 바 있으며, 이후 감사원 및 국민권

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및 부천시 도시계획과로 다수인 민원 등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가로 회신 되었으며, 해당 토지는 1998년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개발하고 남은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 상 보전 용지로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과 같은 시가화 용도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고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개발불능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 민원인에게 토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 불수용(기각) 통보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

1-5-2-1.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1-5-3-1.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1-5-4. 자연녹지지역

(1)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4-4-1.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3-4-1 입지기준

(1)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2) 그 밖에 경사도, 임상도, 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녹지지역은 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3. 표고가 75미터(녹지지역은 65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토지

02 노선버스 정류장 하차 불편 개선 요청

수용(의견표명)

민원요지

❖ 민원인은 버스를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른 새벽 시간에 버스 이용 승객 대부분의 나이대가 60~70대로 버스 하차 시 도로 경계석 가까이에 버스를 세워주면 하차 시 불편함이 없는데 버스기사들이 빨리 하차 후 출발을 하기 위해 도로경계석과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 후 하차하여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차량은 어중간하게 정차하여 승객이 도로 경계석까지 뛰어가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어 버스 하차 시 승객들을 배려하여 각 정류장에 하차 시 도로 경계석 가까이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처리결과

○ 민원인 요청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를 통해 해당 운수 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담당 부서로 하여금 승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의견표명

03 주차단속 불합리성에 대한 건의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민원인은 2021. 3. 31. 주차단속을 당하였는데, 단속을 당한 지역은 민원인 본인 건물과 토지의 인접 지역으로 건물 출입구쪽으로 하여 본인의 땅이 3/4 이상이었고 1/4의 지점에 해당되는 곳에 차량의 바퀴가 닿았다고 해서 주차스티커가 발급되었음

❖ 민원인은 36년 전부터 지금까지 위 주소지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한 번도 주차단속을 당했다거나 위법여부에 대한 사항을 부천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2차례에 걸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어 이의제기를 하게 된 사항임

❖ 구도심에서 내집 앞 주차에 대한 부분은 일상화 되어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도,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본인 소유 땅에 주차하면서 인도에 조금 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억울한 상황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조사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행정안전부(2019. 8.)"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 ○○동 일대는 민원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담당 부서인 주차지도과에서도 그런 현황을 감안하여 보도 주차는 직접 단속보다 이동 조치 등 계도 위주로 처리하고, 이동 조치가 안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도 주차는 민원인이 주민신고제로 신고가 가능한 구역이고, 주정차 단속 직원이 직접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건은 단속 거부가 불가하며, 해당 보도는 평균 6~7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및

전동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 불편에 따른 단속 요청 진정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임

○ 민원인은 36년 전부터 지금까지 위 주소지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한 번도 주차단속을 당했다거나 위법여부에 대한 사항을 부천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최근에 갑자기 2차례에 걸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한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단속되는 차량이 많이 있으며, 민원인의 차량도 2019년 10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단속되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이력이 있고, 최근에 단속된 두 건은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대한 배려 조치로 두 건 중 1건은 면제 처리되었음

처리결과

○ 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보도 주차에 대해 민원신고 접수 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 건은「부천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심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cctv(고정식, 이동식)에 의한 주·정차단속에 대해 단속 전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인터넷에서 서비스 가입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안내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행정안전부(2019. 10.)》

01_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임
- 특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04 이축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위한 경관녹지 변경 요청

수용(권고)

민원요지

❖ 민원인들은 국가의 공공사업(광명~서울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축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과 녹지과 시설녹지팀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축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 이축 토지 매입 후 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건축허가과로부터 이축 토지 전면에 경관녹지가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

❖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3~4개월 후에는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이주를 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들여 매입한 이축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음

❖ 이축 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 효용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간곡히 요청

조사내용

【개 요】

○ 민원인은 공익사업의 수용에 따른 이축을 위한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과 및 녹지과 담당자를 만나 해당 토지에 이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도시계획과에서는 민원인의 이축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최초 자격조건 등에 해당함을 안내하면서, 상담 중 해당 토지와 연접한 경관녹지가 확인되어 관리부서인 녹지과에 건축을 위한 녹지 점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민원인은 녹지과를 방문하여 해당 토지(이용현황: 농작물 경작용 밭)와 연접하여 사실상 출입통로로 이용 중인 쟁점토지(○○ ##-#(경관녹지))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녹지과에서는 현재 상황 그대로 이용(농지 경작용 출입통로 이용)은 가능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점용은 불가하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로 문의 해야함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민원인의 주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됨

처리결과

○ 민원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유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당장 3~4개월 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축이 가능한 줄 알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 현재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관녹지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함)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그 허가나 신고 기준을 세부적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해당 쟁점 토지(○○ ##-#)는 2007. 11. 5. □□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경관녹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경관녹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3호의3과 관련 별표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호에 의거,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녹지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 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나, 건축을 위한 녹지점용 허가는 불가하여, 민원인이 이 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맹지로 현재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기는 하나

▶ 공익사업 진행으로 당장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민원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해당 경관녹지(○○ ##-#)의 도로 변경에 대해 심의를 받아 볼 것을 담당부서에 권고

관련법령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의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 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 (제44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05 자동차 압류해제일자 소급 정정 요청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민원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의 체납을 기화로 처분청은 2005. 5. 18. '경기00구0000'자동차(이하 '쟁점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처분 후 2015. 10. 29. 해제하였음

❖ 한편 처분청은 '쟁점 자동차'의 압류해제일자에 터 잡아 2017. 1. 9. '우체국 예금채권'(계좌번호는 ######-##-######로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최근 처분청이 행한 일련의 압류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혀 압류해제 시점의 소급·정정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

조사내용

【민원발생 경위 및 현황】

○ **발생경위**

▶ 쟁점 자동차(경기00구0000: 93년식 에스페로1.5AT)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해당 쟁점 자동차는 현재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15.10.29.자로 멸실인정 차량으로 등록

▶ 부천시 원미구 세무과에서 민원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2000.7.13.자로 해당 쟁점 자동차에 압류설정 등록

▶ 부천시 오정 세무과에서 2005.3.8. 해당 쟁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록

▶ 이후 부천시 차량등록과의 멸실인정(부천시 차량등록과-35595(2015.10.29.))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세무과의 2000.7.13.자 압류에 대해 2016.12.6.자로 압류해제 등록

○ 체납 및 압류현황

▶ 체납현황

세목명	과세물건	체납금액	결손금액	합계
계	경기00구0000 / 종합소득	1,600,000	4,400,590	6,000,590

▶ 압류현황

구 분 (압류번호)	일 자	압류 물건	비 고
설 정 (005523)	2000.07.13.	경기00구0000	구)원미구 세무과
설 정 (051208)	2014.03.12.	경기00구0000	구)오정구 세무과
해 제 (051208)	2015.10.29.	경기00구0000	2015.10.29. 멸실인정 원인으로 압류해제
해 제 (005523)	2015.10.29.	경기00구0000	2015.10.29. 멸실인정 원인으로 압류해제
설 정 (000012)	2017.01.09.	금융기관(지점) : 미래창조과학부(부천@@ @우체국) 예금종류 : 저축예금 계좌번호 : ######-##-###### 압류금액 :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 잔액 중 지방세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	

【사실관계 확인】

○ 쟁점 자동차(경기00구0000: 93년식 에스페로1.5AT)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쟁점 자동차는 2015.10.29.자로 멸실인정 차량으로 등록되었고, 현재까지도 말소등록 되지 않음

○ 또한 민원인은 부천시 구) 원미구 세무과에서 민원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해당 쟁점 자동차에 2005.3.8.자로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2000.7.13.자로 압류설정을 하였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2005.3.8.자는 압류처분 일자가 아닌 번호판영치 일자임

○ 이후 부천시 차량등록과의 멸실인정(부천시 차량등록과-35595(2015.10.29.))의 원인으로 2015.10.29.자로 압류해제 등록되었음

【검토결과】

○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자동차의 차령(車嶺),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말소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는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된 경우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2020.3.24.)을 통해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압류해제 소급일자는 번호판 영치일자로 번호판영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멸실인정 자동차는 폐차 등 사실상 멸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도지사가 멸실을 인정한 날짜(멸실인정일)를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압류 당시(실제 부천시의 압류일자는 2000.7.13.자임)에 해당 쟁점 자동차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 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처리결과

○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압류해제 소급 요청일자는 번호판 영치일자로 번호판영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은 멸실인정 자동차로서 멸실인정 자동차는 폐차 등 사실상 멸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도지사가 멸실을 인정한 날짜(멸실인정일)를 기준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쟁점 자동차의 멸실인정에 따른 압류해제는 그 멸실인정일(2015.10.29.)을 압류해제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기본법」제40조에 의거 압류해제일인 2015.10.29.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 채권(우체국 예금)의 압류(2017.1.9. 압류설정)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결정

06 무단점용료 징수 관련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민원인은 부천시 ○○동 ###번지 도로가 통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를 25년 전쯤에 매수할 때도 국가 도로가 있는지 몰랐으며 구입한 이후 현재까지 경작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 말부터 부천시 도시농업과에서 해당 토지에 도로가 있었으니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는 명령과 변상금을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

❖ 민원인은 해당 변상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중에 제3자에 의해 납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음. 해당 토지 소유주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납부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이 유출되었는지 더욱 납득이 가지 않음

❖ 해당 내용에 대해 도시농업과에 문의한 결과 본인들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고, 본인들은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음. 민원인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민원인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경위가 의심스러우며, 혹시라도 공무원이 누군가와 결탁되어 있다면 이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보여짐

조사내용

○ ○○동 ###번지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나, 소관부서인 도시농업과에서는 당해 토지에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용하였던 농로가 있었던 상황으로 민원인의 무단점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2018. 12. 20. 도시농업과로 정보공개 청구(“○○동 ###번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법적 조치 요청”) 민원접수에 따라 2019. 1. 3. 현장 출장 후 무단점유 사실 확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측량실시 및 무단점용료 부과 절차 진행

○ **민원 경과**

일 자	내 용
2019. 04. 22.	무단점유 면적 파악을 위한 지적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2019. 05. 20.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적측량 관련 참석 등 협조 요청
2019. 05. 30.	○○동 ###번지 현황 측량 실시
2019. 07. 01.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 발송
2019. 07. 29.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019. 08. 06.	이의신청 제출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 → 조사결과 이유 없음 결정
2019. 08. 07.	이의신청 결과 회신 우편 발송
2019. 10. 16.	납기 내 미납으로 무단점용료 독촉장 우편 발송
2019. 11. 15.	무단점용료 납부
2020. 07. 17.	무단점용료 1차 부과 이후 현장 재확인
2020. 07. 27.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2차) 부과 사전안내 우편 발송
2020. 09. 01.	무단점용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2020. 09.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신청 접수
2020. 11. 06.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불허가 통보 우편 발송
2020. 12. 08.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12. 28.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021. 01. 25.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접수→결과(미반영)
2021. 01. 29.	농업생산기반시설 원상회복 명령(1차) 우편 발송
2021. 03.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원상회복 명령(2차) 우편 발송
2021.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3차) 사전안내 우편 발송
2021. 05. 24.	「농어촌정비법」제130조(벌칙)제3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라 고발 조치(용산경찰서)
2021. 05. 31.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
2021. 06. 02.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검토 회신 우편 발송
2021. 06. 14.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 무단점용료 부과 부서인 도시농업과에서 2019. 8. 20. 민원인에게 무단점용료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도시농업과에서는 2019. 10. 16. 무단점용료 독촉고지 우편 발송

○ 현재 부천시 세외수입 징수업무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부과 담당 부서에서는 독촉장 발송까지 담당하고, 독촉장 납부기한 이후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는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의 무단점용료는 도시농업과에서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 그 체납관리 업무는 징수과로 이관되었음

▶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지서 발급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19. 11. 15. 당시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박00)의 아이디로 출력된 사항 확인 결과 당일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민원인의 무단점용료 체납고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면서 제출한 영수증 사진에서도 고지서 발급일자가 2019. 11. 15.로 찍혀 있고, 발급자 성명도 세외수입 징수팀 소속이었던 직원(박00)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법령 등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4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별표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결사무

소관부서	분장사무	비고
징수과	8.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관리 업무(지난 연도 및 현년도 독촉장 납부기한 이후, 차량등록과 소관 제외)	

처리결과

○ 민원인은 자신의 무단점용료가 제3자에 의해 납부가 되었다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 명의로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과에서 제3자에게 납세자의 체납고지서를 교부 시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화 했을 때에 한정해서 체납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어 민원인의 체납고지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

07 물건적치 단속소홀 및 인접도로변 펜스철거 요청

일부수용(권고)

민원요지

❖ ◐◐◐동 ###-# 과일가게에서 2년 전부터 노상점거하며 호객 영업을 하고 있어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민원인이 알아보니 이미 2년 전부터 민원 제기가 있어 왔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 해당 과일가게가 점거하고 있는 인도는 병원이 많이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많이 다니고 있으며, 지체 장애가 있는 민원인도 두 곳 이상 병원을 다녀야 하고 한 곳은 매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좁은 길을 과일가게가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돌아서 다니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 생활안전과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조치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로 $$$ 라인에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 펜스로 인해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십 미터를 더 가서 인도에 오르게 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다는 펜스가 되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동 ###-# 앞의 펜스만이라도 철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함

조사 및 처리결과

○ 해당 과일가게는 2019년 7월 광역동으로 조직 개편한 이후 2019년 8월부터 월평균 4~5건씩 전화 및 인터넷으로 보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경인로 양방향으로 같은 영업 형태의 과일가게 3곳이 운영 중으로 일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민원 접수 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인도로 나와 있는 과일 및 야채를 가게 안으로 이동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민원이 제기된 해당 과일가게 앞 인도에는 버스표 판매점과 버스정류장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어 인도 폭이 다른 곳보다 좁은 상황인데, 해당 과일가게에서 과일 및 야채를 일부 인도에 적치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2020년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6건,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민원 제기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 및 단속 업무의 유연화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하였

다고 함

○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과일가게 앞 인도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보행할 수 있는 인도 폭도 좁은데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과 해당 가게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은 물론 일반 보행자도 통행에 불편이 있어 7월 2일 이후부터는 해당 구역을 매일 순찰하고 현장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담당 부서에 민원인과 시민들의 보행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가게의 인도 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정비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

○ ◇◇로 $$$ 라인에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 펜스로 인해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십 미터를 더 가서 인도에 오르게 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다는 펜스가 되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동 ###-# 앞의 펜스 철거 요청에 대해

▶ 민원인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해당 위치의 펜스는 2008년도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전 펜스로 주행 중인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며, 민원인은 버스정류장 인근 가게의 인도 물건 적치에 따른 통행 불편으로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 과일가게 옆 펜스를 일부 철거하여 차도에서 바로 인도 진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차도에서의 보행을 위해 펜스 철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과일가게의 인도상의 물건 적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등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08 동물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매뉴얼에 대한 개선요구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가' 유형에서는 신고인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피신고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서 징구'를 하겠다는 말인지, 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피 신고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 G: 유형을 보면 견주도 특정하고, 년도, 일시, 경도, 위도까지 정확한 핸드폰 사진, 동영상의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G: 유형에만 부천시CCTV 확인 단서가 있는지

❖ 3가지 사항 모두 업무절차 과정에 '확인서 징구'가 있는데, 왜 나. G 유형에만 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CCTV 확인 조항과 단서가 있는지, 또한 공공기관 CCTV가 없는 곳에서 위반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안전신문고 앱(C:, S:)으로 신고한 유형에도 '확인서 징구' 사항이 있는데, *표에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확인서 징구' 없이도 바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말인데, '확인서 징구'도 하지 않을 거면서 절차상에는 형식상 넣은 것인지

조사 및 처리결과

○ 도시농업과에서는 2021. 6. 17. 「동물보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 매뉴얼을 만든 후 2021. 7. 8. 민원 회신 시 해당 매뉴얼을 포함하여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뉴얼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동물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매뉴얼》

가.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민원 접수 및 현장적발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법원에의 통보 및 과태료 재판

나.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 위반행위자를 특정한 경우

○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유형 G, C, S)
- G: 신고자 휴대폰(안전신문고 앱 제외) 또는 PC에 저장된 사진

민원 접수 (G)	⇒	확인서 징구 (※ CCTV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법원에의 통보 및 과태료 재판

※ 확인서 징구 시 피신고인(위반행위자로 특정되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CCTV확인

- C: 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후 바로 신고한 사진
- S: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및 저장 후 당일 신고한 사진

민원 접수 (C, S)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법원에의 통보 및 과태료 재판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C, S)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탑재하여 이를 근거(증빙자료)로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매뉴얼 내용 중 '가' 유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 피신고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확인서 징구'가능 여부와 만약 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 피신고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 '가'유형은 동물보호법 위반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장소로 출장하여 피신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상으로는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피신고인을 특정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임.

○ 3가지 경우 모두 업무 절차에 '확인서 징구'가 있는데, G유형에만 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CCTV 확인 조항과 단서가 있는 사유와 다른 두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란 단서가 없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과태료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 신고상으로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G유형과 같이 신고자의 휴대폰 또는 PC에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CCTV 확인 등 부가적인 조사를 거쳐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이 탑재되는 등 시스템상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TV 확인 등 부가적인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 그 밖에 피신고인에게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는 것은 추후 단속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자인 및 기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으므로 어떤 유형에서든 확인서 징구를 하고 있음

○ 공공기관 CCTV가 없는 곳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 담당 부서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가 해당 장소로 출동하여 피신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신고(C, S유형)의 경우는 바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계도 및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주요 민원발생 지역(공공장소, 주택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음

○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찍은 원본 사진, 동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보내면 휴대폰의 정보가 그대로 앱으로 전송되어 위반행위 년, 일시, 초, 위도, 경도까지 나오는데도, 부천시는'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란 이유를 대면서 공공기관 CCTV로 확인하겠다는 사항은 '확인서 징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시 개인적인 영상 기록매체(핸드폰 등)를 활용하였을 때 민원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상기록매체(핸드폰 등)의 경우 왜곡되거나 편집될 가능성 등이 있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위해 CCTV 확인 또는 확인서 징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공공기관 CCTV 확인이 확인서 징구를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매뉴얼 중 안전신문고 앱(C, S)으로 신고한 유형은 '확인서 징구'없이도 바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서 징구'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절차상에 형식상 확인서 징구를 넣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도시농업과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C, S유형)을 통해 신고를 하더라도 피신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신고인을 만나 위반사항을 고지하는 등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음

○ 민원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견주 없이 개들만 밖으로 풀어 놓은 경우가 동반했을 때 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견주가 누구인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 파일에 견주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일하기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애견을 동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 단, 사안에 따라 제13조 제1항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민원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휴대폰 신고가 보편적인데도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안전신문고 앱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

▶ 영상기록매체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는 자료의 신빙성 차원에서 개인적인 영상기록매체만으로 위반행위를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영상기록매체(사진 등) 신고의 경우에도 CCTV 확인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도시농업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만든 자체 행정처분 매뉴얼에 대해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 결정

09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부천시 도시농업과에서는 신고 파일에 견주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견주가 동반하고 외출할 때도 있지만 견주가 동반하지 않고, 개들만 밖에 풀어 놓은 경우도 있으며 민원인이 농림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견주 없이 개들만 밖으로 풀어 놓은 경우가 동반했을 때 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으며 민원인이 견주가 누구인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파일에 견주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반려견 '인식표' 없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요구

조사결과

○ 민원인은 '인식표' 없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사진을 첨부함과 동시에 '인식표' 없음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외출 시 소유자 연락처 표시한 인식표가 필수임)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에 확인 결과 반려동물 인식표 관련 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피신고인에게 '인식표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관련법령 등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3. 17., 2021. 2. 9.>

1.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2·제8호·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

《동물보호법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10	20	4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10	20	40
다.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라.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20	40	6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	20	40
바.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	20	40
사.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	10	2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20	30	5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5	7	1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카.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3	100	200	300
타.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4	100	200	300
파.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5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하.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6	100	200	300
거.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7	100	200	300
너. 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2	30	50	100
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30	50	100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30	50	100
어.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30	50	100
저.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	40	60
처.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2호	20	40	60
커.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3호	30	50	100
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4호	20	40	60
퍼.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5호	20	40	60

10 교회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 부당

의견표명

민원요지

❖ 민원인은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2007.10.18.부터 △◎동 ###-# 상가 2층에서 ○△문고를 운영 중 부천시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2년 2월에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게 되었고, 당시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금 수령은 개인명의 통장으로는 불가하고 도서관이 법인이어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 어렵게 ○△작은도서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5년치의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음

❖ 법인으로 신고할 때 세금고지에 대한 예고도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그것도 5년이 지난 지금 5년치를 한꺼번에 소급 부과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음

❖ 현재 여건상 법인등록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들은 개인 명의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매우 열악한데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조사 및 처리결과

○ 부천시 도서관에서는 2012년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계획'(도서관정책과-1119(2012.7.26.))에 따른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제3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 사용 시 개인 명의로 카드를 만드는 경우 보조금 외 다른 포인트와 구분할 수 없어 단체 명의의 통장을 만들 것을 안내하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민원인은 ○△교회 목사로서 2007년부터 ○△문고를 운영해오던 중 도서관의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관련 안내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도서관의 안내대로 2012년 2월에 ○△작은도서관으로 단체 등록을 하여 2012년부터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지원 현황은 별첨 1과 같음.

○ 부천시 세정과에서는 2021. 2. 19.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주민세 기획조사 추진계획’통보 시 지적사항[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 조사-도서관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부과]에 따라 그간 비영리법인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과세제외되었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단체) 중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21개소에 대해 4,750천원을 추징하였음

▶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에서 균등분이란 개인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작은도서관’은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기도의 기획조사 통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에 대한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세정과에서는 해당 기획조사가 정식 감사나 지도·점검을 받은 것이 아닌 누락 세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따른 추징으로 같은 조항 제5호에 의거 고지서 1매당 부과세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과세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 대한 안내문구를 동봉하여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서를 발송하였음

○ 부천시 도서관에서 법인으로 등록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그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 등록 당시에도 그에 따른 세금 부분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2021년에 예고도 없이 5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 도서관에서는 민원인이 개인명의로 운영하던 도서관을 법인(단체)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법인(단체) 등록에 따른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 발생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닌 관계로 안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 세정과에서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주민세 기획 조사 추진에 따른 조사 결과 「지방세법」상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하고 있는 민원인의 해당 도서관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추징한 처분은 법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도서관에서는 개인에서 법인(단체)으로의 변경 등록을 안내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가 비록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 등을 잘 알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서 법인(단체)으로 등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이 있는지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알아보고 추가 안내를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소 미흡한 업무추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나 일반 법인(단체)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과세제외 처리하였으나 2021년 2월 경기도 조세정의과의 주민세 기획조사 통보에 따라 민원인의 해당 도서관을 포함한 법인(단체)으로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부과 누락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치의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그 금액이 비록 고지서 1매당 부과세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소액이라고는 하나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나 과세예고를 거치지 않고 고지서 발송 시 안내문구만 동봉하여 발송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됨

○ 작은도서관의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지0994 결정(2015.10.21.) 및 경기도 지도점검(2020년도 수원시 지적사항) 결과와 세정과의 현지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작은도서관에 이미 부과고지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세정과에서 방문·면담을 통해 추징된 주민세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수차례 전화 상담 등을 하였음에도 민원인은 법

인(단체)으로 등록한 작은도서관과 개인사업자로 등록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과의 불공평한 행정처분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민원인의 도서관에 부과된 주민세(법인균등)는 사립작은도서관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단체) 등록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 세금으로 작은도서관의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5조(예산의 지원 등)에 따르면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는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세공과금으로서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주민세(법인균등)를 시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인을 비롯한 법인(단체) 등록자의 개인사업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사업 관련 예산에서 당장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

관련법령 등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도서관법》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6. 2. 3.>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전문개정 2017.8.7.]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신설 2017.8.7.]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8.7.>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8.7.>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8.7.]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7.8.7.]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민원회신 부적절

일부수용(의견표명)

민원요지

❖ 민원인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나 2021년 7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장공사 공법(특허번호)을 3개로 한정하기로 의결한 내용 중 배○○ 감사 본인이 추천한 “B”라는 도색업체의 공법 특허번호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서○○ 이사, 황○○ 이사, 김○○ 이사와 수시로 사적모임을 갖고 동 내용을 회장 해임 사유라고 선동하여 2021.9.9. 입주자대표회의를 위법하게 소집하여 본인의 회장 해임을 가결하여, 이에 민원인이 “위법하게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인 본인을 해임 가결하고 공고하였는데 해임 절차와 해임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2021.9.13.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10.26. 부천시 공동주택과의 민원 회신 내용이 너무나 부정확하고 부실하여 고충민원 제기

조사내용 및 처리결과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회장이 14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배○○ 감사 등이 위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의 해임을 가결하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민원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회의 소집 및 해임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회의는 관리규약 제23조제1항이 아닌 제20조제6항,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므로 민원제기 시 지적한 회의소집 주최와 14일 경과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건은 2021.8.24.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외 3인의 명의로 개최공고 후 2021.9.3. 회장 직무대행인 총무

이사가 재공고하여 2021.9.9.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에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 발언권을 준 것으로 확인되어 회장 등 임원 해임을 위한 회의소집 사전공고와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제25조에 따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과 관련한 회의소집 공고문(2021.9.27. 및 2021.9.3.)에 소집 근거를 관리규약 제20조제6항이 아닌 제23조제3항제4호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단순 오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회의 소집 공고문에 그 소집 근거 조항을 잘못 기재한 것에 따른 해당 회의의 효력 유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입찰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10.31.)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도장공사 입찰공고 및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는 민원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 및 회의록 등의 자료로는 도장공사 관련 공법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사항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음

▶ 다만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을 해임한 입주자대표회의 쪽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답변한 부분은 민원인의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어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민원 회신 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담당부서에 의견표명

관련법령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1. 8. 1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개정 2018.10.31.)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2명 이상)
3. 총무이사 1명
4. 이사 3명(1명 이상,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삭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및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매분기, 매월 등>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 요청자의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련 민원 이의제기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2021.5.13.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신고처리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기에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조합 해산 신고처리는 무효임

❖ 해산 신고처리가 무효이므로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로 조합 창립총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동 ◐◇연립 A, B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절대 해주면 안됨

❖ 소규모주택법 제56조, 도정법 제124조(정보공개 및 고지), 제125조(녹음 또는 영상물 보관)에 의거 조합장에게 증거물로 제출받아 민원인들과 확인하게 해주고 조합을 감독하였는지 확인 요구

처리결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38조제1항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조합의 해산은 「도시정비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 조합 정관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로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해산을 결정하였으며, 한편 대법원 1992.10.9.선고 92다

23087 판결 등에 따르면 조합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비법인사단의 경우 민법이 정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민법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조합의 해산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한 ◇◇ 조합의 해산결의를 무효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해산 신고처리가 무효이므로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로 조합 창립총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7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는 바, 해산된 조합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동 ◐◇연립 A, B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절대 해주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구역의 기존 조합인 ◇◇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새로운 ◐◇연립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인가에 대한 거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주택법 제56조, 도정법 제124조(정보공개 및 고지), 제125조(녹음 또는 영상물 보관)에 의거 조합장에게 증거물로 제출받아 확인하게 해주고 조합을 감독하였는지 확인 요구에 대해

▶ 2021.2.18. 민원인이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및 임원명부, 정관, 인가 당시 안내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 민원을 제기

하여, 2021.2.19. 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2021.2.24. 추가로 동일한 정보공개 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부서에서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담당부서에서 ◇◇ 前 조합장 이○○씨가 조합 관련 자료 모두를 민원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이중 서면결의서(투표 용지)의 이름은 제외하고 공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의 요구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정보의 부존재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과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해산된 ◇◇ 조합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감독 이행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정법의 준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에 의거 ◇◇ 가로주택정비사업 당시 총회 속기록 및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 조합의 해산 총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 조합의 해산은 정당함을 여러차례 답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민원 해소를 위하여 ◇◇ 조합 해산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도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특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특례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특례법 제29조 제 3항에 따른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특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특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14. 정비사업비의 변경
15. 융자신청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도정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시 도정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제16호 또는 도정법 제4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생산자물가 상승률분, 도정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이상 늘어나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련 민원 이의제기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의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하는 업무는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되어야하므로 다르게 운영된 업무회의, 대의원 회의, 이사회회의, 총회 의결 및 업무는 무효처리 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법 제56조, 도정법 제124조(정보공개 및 고지), 제125조(녹음 또는 영상물 보관)에 의거 조합 이사회 회의, 대의원 회의, 중요업무 회의록 등, 녹취록, 영상물을 제출받아 민원인들에게 정보공개 처리 요구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총회 의결을 조작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배점표를 조작하여 △△설계사를 내정하는 등 공개입찰을 방해하였음

❖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수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방해하고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조합장이 직접 수거한 서면 결의서는 100% 찬성으로 총회를 조작한 것임

❖ 소규모주택법 제54조(감독 등)에 의거 민원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오니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꼭 회계, 감사, 지도, 감독하여 주기 바람

조사내용 및 처리결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의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업무는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되어야 하므로 다르게 운영된 업무회의, 대의원 회의, 이사회회의, 총회 의결 및 업무는 무효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정비사업 조합 정관 개정조건으로 인가 처리한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 법령 및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하고 그 외 정관사항은 인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2021. 7. 20. 변경되었고 조합정관 변경 전에는 2021. 3. 13. 개최된 새로운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한 정기총회와 2021. 5. 30.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바 해당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는 조합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무효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소규모주택법 제56조, 도정법 제124조(정보공개 및 고지), 제125조(녹음 또는 영상물 보관)에 의거 조합 이사회 회의, 대의원 회의, 중요업무 회의록 등, 녹취록, 영상물을 제출받아 민원인들에게 정보공개 처리 요구에 대해

▶ 담당 부서인 재개발과에 확인 결과 재개발과에서는 조합측으로 부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답변을 한 바가 있으며, 이후 대의원회의 공고문 등의 서면자료 일부는 민원인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하며, 또한 조합원은 네이버카페 및 밴드를 통하여 각종 회의자료, 영상물, 의사록, 업체선정 관련 공개자료를 모두 볼 수 있고, 아울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과의 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총회 의결을 조작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배점표를 조작하여 △△설계사를 내정하는 등 공개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해당 조합 조합원들의 담합이나 및 총회의결 조작, 배점표 조작 등으로 설계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옴부즈만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수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하고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조합장이 직접 수거한 서면결의서는 100% 찬성으로 총회를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해당 조합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3항에 따르면 '서면은 직접, 우편발송, 모사전송, 조합에서 지정한 회수요원 등에게 위탁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합에서 지정한 회수요원 등'의 대상에 해당 조합

의 조합장 및 그 외 조합원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수거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직접 수거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소규모주택법 제54조(감독 등)에 의거 민원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오니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계, 감사, 지도, 감독의 요구에 대해

▶ 담당 부서인 재개발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은 2021년 상반기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이미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점검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2019. 8. 20.,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도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특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특례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특례법 제29조 제 3항에 따른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특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특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14. 정비사업비의 변경
15. 융자신청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도정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시 도정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제16호 또는 도정법 제4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생산자물가 상승률분, 도정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이상 늘어나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상가주차장 불법 주차 차량 불편 신고

불수용(기각)

민원요지

❖ 민원인은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상가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차를 빼지 못하여 근처 파출소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차주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번)로 전화하여 부천시 주차지도과 주차단속반에 문의하였더니 불법주차가 아니고 오후 5시가 넘어 조회할 수 없다며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라는 답변을 하여 난감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업무를 서로 미뤘던 공공기관에 너무 화가 났으며 이런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해진다면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처리결과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어 상가 주차장 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가 관리인이나 상가 건물주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경찰서 등 다른 기관의 업무시스템은 알 수 없는 관계로 경찰의 차주 연락처 조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도록 안내

15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 거부

일부수용(의견표명)

민원요지

❖ 부천시에 있는 신규분양주택에 장애인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어 여러 서류가 필요했으나 필요 서류(인감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어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 민원인은 청약 관련 계약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입게 될 재산상의 손해와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장애인 ○○○씨의 긴장이 높아져 몸이 경직되었으며 장애인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장애인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 심적 충격을 크게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

조사 및 처리결과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제12조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발간)』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중 본인 발급 절차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감신고인은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및 의사확인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의 참고1. 의사능력 및 의사여부 확인방법에 따르면 인감증명사무와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어

▶ 2021.12.13. 민원인과 인감발급대상자 및 부모님이 □□동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에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먼저 이름을 물어봤으나, 인감신고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고, 본인의 인감을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두 차례에 걸쳐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지 못하고, 함께 방문한 가족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

○ 민원인은 지적장애1급의 중증장애인인 ○○○은 일반적인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나 가족들과 편안한 상황에서는 좋거나 싫음 정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가능함에도, 인감증명 발급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 발급 담당 주무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경직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인감증명 발급 담당 주무관은「인감증명법」및『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 확인이 필요하여 그 의사능력 확인을 위해 장애가 있는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성명과 인감발급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그 질문 과정에서 동행한 민원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가족분들과 담당 주무관 간의 의견 상충으로 다소 소란한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낯선 환경과 불안한 상태에서 장애인인 ○○○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감 증명 발급 담당 주무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장애가 있는 ○○○에게 질문을 하였는지에 대해 민원인과 담당 주무관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여 강압적인 태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사료됨.

▶ 인감증명사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대법원2006다63273 판결, 2008.7.24.선고)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등의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은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사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여 담당 주무관이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술로 장애가 있는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성명 등을 질문한 것에 문제는 없다

고 판단되나

▶ 다만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신고인의 의사능력 확인방법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 신고·발급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감증명사무 관련 인감신고인 본인의 의사는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면서 구술·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 또한 구술 또는 필기로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9진정0501400)에 따라 비록 중증장애인인 ○○○이 구술로는 의사능력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기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동반한 가족들에게 장애인의 평소 의사소통 방법을 물어 의사소통을 위한 다른 시도를 해보는 노력도 필요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일한 민원 사례 발생 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민원 응대를 하도록 의견표명

관련법령 등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

⑥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가. 본인발급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한다.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하고, 그 방법으로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 인감신고인은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사무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 및 의사확인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 위임자의 의사능력 및 의사표시 확인 관련 참고1 (203p) 준용

○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한다.(민법9조)

※ 구술·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본인발급의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본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수기 발급대장에 기재한다.

기타 상담 및 처리 사례

1. [21. 1. 4.] 본인의 현재 결손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문의

- 결손은 시효소멸 결손과 무재산 등에 따른 결손이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는 시효소멸 결손이 아닌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으로 잠시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유예해 놓은 상태로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를 하셔야 함을 설명

2. [21. 3. 22.] 시니어테니스클럽 관련하여 체육회 직원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 요청

- 체육회 직원은 부천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체육회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인 체육진흥과를 통해 알아보시도록 안내

3. [21. 3. 30.] 사정이 있어 이모님댁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동 담당자가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하나 없이 주민등록 말소하여 항의했더니, 이모님이 직접 말소신고하여 처리한 것이며 사전에 전화연락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의

- 건물주이신 이모부님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사본첨부 확인하고 설명을 드렸으나, 본인한테 연락주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항의하여, 담당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 통화내역 조회 결과 민원인과의 통화내역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께 내용을 말씀드리고 건물주로부터 신고가 되어 말소등록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며, 사전연락 부분은 현담당자가 전임자의 말만 믿고 안내를 드린 부분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과드리고 양해 당부

4. [21. 4. 8.] 주차단속하는 직원이 공무원증도 패용하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차에 있다며 가지러 가면서 욕설을 했다고 항의

- 주차지도과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결과, 민원인이 횡단보도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미리 차량을 통해 안내 방송을 했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말씀드리고 차량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맞냐며 왜 신분증이

없냐고 하여, 공무원증이 차량에 있어서 가져와서 보여드렸더니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그건 개인정보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건 안된다고 얘기한 것이며, 욕설을 한적은 없음. 또한 해당 지역은 주정차단속 구역이고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안빼면 어쩔거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민원인께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니, 주차 단속된 것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고, 직원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분명히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부서의 답변을 받아보시도록 안내

5. [21. 4. 14.]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합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것처럼 설명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항의 및 피해호소

➔ 약 2년 전에 민원인의 소유 주택에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쪽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 당시 건축부서 담당 공무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설명하여, 그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세금고지서도(취득세) 나와서 납부하였으나 다음 해에 또다시 이행강제금이 나와서 너무 황당하여 담당 직원한테 항의를 했더니, 직원이 이제 와서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함.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당부

6. [21. 4. 14.] 이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동생과 주소를 함께 두게 되었는데, 다주택자로서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가 신고납부하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

➔ 확인 결과 민원인은 취득세과를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납부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어떠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었으며, 현행 법령상 1가구는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록표 상의 가족으로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2주택 소유가 확인되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령상 세율 조정 등은 어렵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시도록 안내

7. [21. 4. 22.] 예전에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차량에 대해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다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부당함을 호소

-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것만으로 바로 말소등록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우선은 말소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후에 만약 안되었다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고, 말소등록이 되면 말소등록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결손처분 등의 검토가 가능함을 안내

8. [21. 5. 11.] ○○동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주말 단속 요청

- ○○동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주말 단속은 코로나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를 지정한 곳으로, 사전예고를 2회 실시한 이후, 6월 12일(토)부터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평일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불편에 대해서는 양해를 당부

9. [21. 5. 28.] 교회 교육관 사용건물 재산세 감면 관련 문의

- ○○동 1##-1 건물 소유권을 개인에서 교회 법인명의로 작년에 변경을 하였는데, 재산세가 과세되어 감면을 받고자 한다고 하여 우선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세과에 신고하실 것을 안내

10. [21. 6. 1.] ○○동 ##-2 거주자인데, ○○북부시장에서 ○○중학교쪽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모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 등에 매우 불편

- ○○북부시장에서 ○○중학교쪽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모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 등에 매우 불편하고, 근처에 공한지 노외주차장이 있음에도 시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안쪽이 아닌 그 입구를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함. 주변의 불법 주차문제로 경찰서에 실선을 그어줄 것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출구 쪽에 늘 주차하고 있는 냉동탑차(뒷번호: ****)때문에 더욱 불편함을 호소하여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셔서 관계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민원을 인터넷으로라도 제기하시도록 안내하고, 실질적인 민원 해소는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 상의 실선이 생겨야 가능할 것 같으니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쪽에 빠른 조치 요구를 하시도록 안내

11. [21. 6. 4.] 자동차 상속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범칙금 부과 부당 항의

➔ 민원인은 당초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하고자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었는데, 당시 담당자는 무조건 상속협의서를 갖고 오라고 하여 본인은 협의가 안돼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재판 끝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신고하라고 해서 본인은 그 말만 믿고 재판이 끝난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이전 등록을 하러 갔더니 기한이 경과 되었다고 범칙금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 민원인이 신고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직접 전화까지 해서 문의하고 공무원에게 내용을 확인하였는데도 일이 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나, 당시(5년 전) 직원의 안내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속이전 등록을 하면서 신고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드리고, 부과된 범칙금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도록 안내

12. [21. 6. 15.] 신중동역 ○○○○ 시티 오피스텔 공사장 파편으로 주차해둔 차량 파손 관련 손해배상 요구

➔ 신중동역 ○○○○ 시티 오피스텔 공사장 파편으로 주차해둔 민원인의 차량파손과 관련하여 □□건설에 문의했는데, 거기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사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차량 파손의 피해를 당했으니 담당부서에서 조치 요구. 담당부서인 건축허가과에 확인 결과 □□건설에서는 차량파손에 대해 본인들 때문에 파손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니 법무팀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여, 다시 한번 손해배상에 대해 검토 후 민원인께 연락 줄 것을 당부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

13. [21. 6. 30.] 불법건축물 식품위생 영업허가 취소 요구 민원 미회신 항의

➔ 민원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잘못된 영업허가에 대해 허가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 민원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여 부서에 확인 결과, 당초 영업허가는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영업허가 당시에는 적법한 건축물(건축물대장상 확인)에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났었고, 그 이후 해당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으로 부서에서는 허가취소 대상이 아닌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업소 직접 출장하여 내용을 시정명령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유선으로라도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안내

14. [21. 10. 27.] 긴급생계지원 담당자의 민원 응대 태도 부적절

- 지난 달에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황이 급하여 오정동에 신청한 후 시청에 민원을 올렸더니, 동 담당자가 자택 방문 시 민원 제기한 사항을 얘기하여 불편했었고, 또한 오정동 방문 시에 민원인은 무시한 채 동료들과 잡담을 하는 등 민원 응대태도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해당 직원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당 동에 전화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하여 당시 담당자 확인하여 직원 이름 알려주고 부당한 응대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민원제기 안내

15. [21. 11. 12.] 광역동 환경산업팀 직원의 민원처리 및 응대 불만

- 민원인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본인의 집 주변으로 6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며 몸도 아프고 매우 힘든 상황으로 주변 공사장에서 공사과정 중에 레미콘차량 살수처리 미시행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을 증거자료까지 확보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시정조치가 된 것이 없고, 심지어 민원인 본인은 보상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담당 팀장이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보상얘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민원 응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해당 민원인은 민원인 주거지와 가까운 3곳의 공사장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곳은 민원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3곳 이며, 민원제기 시에 현장 출장을 나가고 있으며 민원제기되어 현장 확인 후 현재 처분도 하였다고 하여 민원인이 현재 우울증도 앓고 있고 많이 힘들다고 하니, 민원 응대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16. [21. 11. 30.]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중과 부과 부당

- 민원인은 소유 주택에 오래 전에 조그만 면적의 창고 등 용도로 증축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 건축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 통지가 됐었으나 철거하기가 힘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소득도 없고 게다가 코로나로 전 국민이 너무나 힘든 시기에 이행강제금이 중과로 변경되었다면서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여, 이에 대해 확인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설명하였으나 계속 부당하다고 하여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것을 안내

17. [21. 12. 16.] 취득 당시 알지 못했던 공동주택의 위반사항으로 취득한지 4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 민원인은 10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의 6층의 한 호수를 2017년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에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고 2021년 11월까지도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없었는데, 2021년 11월에 갑자기 민원인 소유 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되었다고 함. 민원인은 이 공문을 수령하고 해당 건물의 7층부터 10층까지에도 민원인 소유 호수와 동일한 위반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호수들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7층부터 10층까지에 대해서는 2014년 항측결과에 따라 당시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되어 관련 건축법 개정 전의 법령 적용으로 현재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은 똑같은 위반건축물이 존재했음에도 민원인 소유 호수에 대해서만 당시 조사에서 누락되어 현행 법령 적용으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억울함을 호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주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판시(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0137, 판결 참조)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14년 항측으로 적발된 7~10층 부분의 위반건축물 조사 당시 귀하 소유의 6층의 위반건축물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항측 자료 상에서는 6층 부분이 건물의 외벽에 가려져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항측 자료를 기초로 한 7~10층 부분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시에 담당 공무원이 6층 부분의 위반건축물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처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민원인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 출장으로 민원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2021.10.1. 귀하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위반건축물 철거 외에는 민원해소는 어려움을 안내

07

부록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OMBUDSMAN

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Bucheon

1. 연 혁 126

2. 역대 시민옴부즈만 현황 129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130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36

제7장
부록

1. 연혁

일 시	내 용
1996. 4. 15. ~ 4. 24.	옴부즈만제도 운영 실태 조사(프랑스, 스웨덴, 일본)
1997. 1. 17.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부천시조례 제1483호, 제4장 제22조 부칙 1
1997. 4. 21.	제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1997. 4. 2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부천시조례 제1486호(시장직속→부시장 직속)
1997. 5. 1.	옴부즈만 업무 개시
1997. 9. 8.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8명)
1999. 7. 10.	제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1999. 12. 10.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확대구성(18명)
2000. 1. 4.	시민옴부즈만 1명 추가 위촉
2000. 5. 12.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설 - 민원 접수처리
2001. 8. 24.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재구성(30명)
2002. 1. 1.	제3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04. 1. 1.	제4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04. 3. 26.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확대 구성(32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2명 추가 위촉
2005. 8. 29.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정비 및 재구성(32명→16명)
2006. 1. 1.	제5대 시민옴부즈만 재위촉(연임)
2006. 3. 28.	자문위원회 정비 및 재구성(16명→14명)

일 시	내 용
2006. 8. 29.	시민옴부즈만 대통령 표창 수상(개인)
2006. 12. 29.	제3회 옴부즈만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단체)
2007. 11. 20.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 제정
2008. 1. 1.	제6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08. 12. 26.	옴부즈만 일반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37명)
2009. 2. 2.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정비(분야별 위원회 구성)
2010. 7. 29.	제7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10. 10.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사무기구 확대(행정6, 행정7, 시설7, 기능8)
2010. 10. 22.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확대구성(29명→31명)
2010. 10. 26.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확대구성(31명→33명)
2010. 11. 2.	시민소통실무위원회 구성(8명)
2010. 12. 13.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확대 ※〔전문조사원 1명 임용(총 5명)〕
2011. 6. 1.	시민소통실무위원회 위원 확대구성(8명→13명)
2011. 9. 1.	옴부즈만 자문위원 정비(33명→25명)
2011. 12. 8.	중국 신방국 관계자 시민옴부즈만 방문(7명)
2011. 12. 15.	제7대 시민옴부즈만 사퇴
2012. 2. 29.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2012. 7. 2.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소속 변경 (감사실→민원담당관)
2014. 7. 1.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소속 변경 (민원담당관→민원실)
2015. 4. 1.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소속 변경(민원실→민원과) ※옴부즈만팀 폐지(사무기구 민원심사팀으로 이관)
2015. 10. 1.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15. 11. 26.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33명)
2017. 10. 1.	제9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17. 12. 3.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26명)
2018. 1. 1.	시민옴부즈만 사무기구 소속 변경 (민원과→감사관실)
2018. 2. 2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개인)

일 시	내 용
2018. 3. 7.	옴부즈만 현장상담실 운영 개시(주1회)
2018. 4. 25.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개최
2018. 10. 11.	전국 옴부즈만워크숍 고충민원처리 사례발표
2019. 2. 20.	옴부즈만 현장상담실 운영 개시(주1회)
2019. 5. 20.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6. 28.	세계 옴부즈만 협회(IOI) 가입
2019. 8. 2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0. 1.	제10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19. 12. 4.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15명)
2021. 10. 1.	제11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2021. 12. 4.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18명)

2. 역대 시민옴부즈만 현황

번 호	성 명	위 촉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이부영	‘97. 4. 21. ~ ‘99. 6. 30.	부천시 재정경제국장
제2대	신철영	‘99. 7. 1. ~ ‘01.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제3대		‘01. 7. 1. ~ ‘01. 11. 10.	
제2대	이강용	‘00. 1. 3. ~ ‘01. 12. 31.	부천시 지역경제국장
제3대	장상진	‘02. 1. 1. ~ ‘03. 12. 31.	부천시 시민복지국장
제4대	강진석	‘04. 1. 1. ~ ‘05. 12. 31.	부천시의회 의원
제5대		‘06. 1. 1. ~ ‘07. 12. 31.	
제6대	이강진	‘08. 1. 1. ~ ‘09. 12. 31.	부천시의회 의원
제7대	한병환	‘10. 7. 29. ~ ‘11. 12. 15.	부천시의회 의원
제8대	박민섭	‘15. 10. 1. ~ ‘17. 9. 30.	국회의원 4급 보좌관
	송창섭	‘15. 10. 1. ~ ‘17. 9. 30.	부천시의회 의원
제9대	송창섭	‘17. 10. 1. ~ ‘19. 9. 30.	부천시의회 의원
	송재용	‘17. 10. 1. ~ ‘19. 9. 30.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0대	김영협	‘19. 10. 1. ~ ‘21. 9. 30.	경기도의회 의원
제11대	김영협	‘21. 10. 1. ~ ‘23. 9. 30.	경기도의회 의원

3.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7.01.17 조례 제1483호
(일부개정) 1997.04.21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1998.04.01 조례 제1565호
(일부개정)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99.07.29 조례 제1673호
(일부개정) 2001.07.27 조례 제1843호
(일부개정) 2010.01.11 조례 제2463호
(전문개정) 2010.10.01 조례 제2540호
(일부개정) 2015.01.12 조례 제2931호
(일부개정) 2019.05.20 조례 제34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0.〉
2. "소속기관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20.〉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개정 2019.5.20.〉
4.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개정 2019.5.20.〉
5.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19.5.20.〉

제2장 옴부즈만

제3조(옴부즈만의 설치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12.〉〈전문개정 2019.5.20.〉

②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조의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5.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6.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이상 전문적으로 하거나 했던 자.〈개정 2015.1.12.〉

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20.]

제4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4.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5.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무의 독립성)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12.〉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소속기관등이 행한 행위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19.5.20.〉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7.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중재 〈전문개정 2019.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0.〉

제7조의2(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전문개정 2019.5.20.]

제8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9조(위촉 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5.20.〉〈단서신설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15조(시에의 통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지) 옴부즈만은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에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제21조(사무기구)

①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7.04.01 규칙 제1052호
(일부개정) 1999.03.30 규칙 제1172호
(일부개정) 2005.03.11 규칙 제1409호
(일부개정) 2009.11.30 규칙 제1577호
(전부개정) 2010.10.18 규칙 제1618호
(일부개정) 2015.09.14 규칙 제1808호
(일부개정) 2016.08.16 규칙 제1856호
(일부개정) 2019.08.26 규칙 제19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장 시민옴부즈만

제2조(시민옴부즈만)

① 시민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삭제 2019.8.26〉
2.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2015.9.14〉

제2조의2(수당)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4]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4〉

②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8.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14〉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

① 시민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의2(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14]

제7조의3(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례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 월요일·수요일·금요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시민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8조(고충민원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제9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인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조사 제외 통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보서에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증의 휴대 등) 시민옴부즈만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제14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권고·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5조(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통보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로부터의 통보에 대한 고충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6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4장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제17조(전문조사원 임명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전문조사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② 전문조사원의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4〉

1. 행정·재정·기술·복지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5.9.14〉
2. 행정·재정·기술·복지 분야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14〉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부문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14〉
4.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14〉
5.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교육·상담·화해·조정 등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14〉

③ 전문조사원의 채용, 채용계약의 해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부천시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4〉

제18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9조(공인의 사용)

①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부천시 공인 조례」및「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공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년 월 일

부천시시민옴부즈만 귀하

우편번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법인 그 밖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고충민원 신청의 사유	
고충신청의 원인이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	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유무	□ 유(○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table>
<tr><td rowspan="2">대 리 인</td><td rowspan="2">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td><td>신청인과의 관 계</td><td rowspan="2">(접수인)</td></tr>
<tr><td></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고 충 사 항 처 리 부

접 수		접수 및 처리 담당자	고충내용 (요 약)	민 원 인			경유 또는 이첩	협조 또는 조회	조사 년월일	신청인 에통지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조치 결과	확인	공표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연락처								

210㎜ ×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제 외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신청하였던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조사하지 않는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table>
<tr><td colspan="2">

고 충 민 원 처 리 지 연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td></tr>
<tr><td>고충민원 신청의 취지</td><td></td></tr>
<tr><td>지연되고 있는 사유</td><td></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table>
<tr><td colspan="2">

고 충 민 원 조 사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므로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조사의 취지</td><td></td></tr>
<tr><td>조 사 일 시</td><td></td></tr>
<tr><td>조사의 내용</td><td></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table>
<tr><td colspan="2">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td></tr>
<tr><td>고충민원 신청의 취지</td><td></td></tr>
<tr><td>조 사 결 과</td><td></td></tr>
<tr><td>조 치 내 용</td><td></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권고, 의견표명)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년 월 일 자로 접수된 ( )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권고, 의견표명하오니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권고, 의견표명의 취지	
권고, 의견표명 년 월 일	
권고, 의견표명의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권고(의견표명) 조치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부천시시민옴부즈만 귀하

부천시장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권고, 의견표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권고의 취지	
조 치 내 용	
소 관 과	관국 관과소 팀 전화번호: 담당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인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에 대하여 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권고의 취지	
조치통보의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발 행 일 2022. 2.

발 행 처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부천시 길주로 210, 시민옴부즈만

전 화 032-625-2444, 2447, 2448

팩 스 032-625-2449

홈 페 이 지 www.bucheon.go.kr(시민옴부즈만)